

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9. 16.

하동군의회의장 강 희 순

1. 조례명: 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3조)
- 다.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피해조사 및 피해 지원의 제한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전기재해 예방교육(안 제8조)
- 바. 재정지원(안 제9조)
- 사.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(안 제10조 및 11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star0208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: 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동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.
2. “전기재해”란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.
3. “농어업시설”이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0호,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) ①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해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

2.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
3. 전기재해 대응매뉴얼
4.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예방사업)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군내 농어업 전기시설 안전 점검
2. 군내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
3.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
4. 전기재해 조사·연구 및 대응매뉴얼 마련
5. 전기재해 예방·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
6. 그 밖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사업)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농어업시설의 전기안전 점검
2. 노후화된 농어업시설의 전기 수리 및 교체
3.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·기자재 또는 인력·비용의 지원
4.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
5.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피해조사) ① 군수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

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피해조사의 범위, 방법, 그 밖에 피해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7조(피해 지원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
2.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
3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

제8조(전기재해 예방교육) 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교육
2. 올바른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
3.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) 군수는 제4조, 제5조, 제6조 및 제8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

을 위하여 지자체,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